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기타(정보공개)
원 고	□□□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외 4명 (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판결선고일	[1심]2019. 4. 5. 원고승소	비 고	
사건개요	❍ 원고는 2018. 3. 11.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실시한 각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취지로,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지명만으로 '피고○○청장'으로 지칭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은 2018. 3. 16. 피고 ○○청장은 2018. 3. 21., 피고 ○○청장은 2018. 3. 20., 피고 ○○청장은 2018. 3. 19., 피고 ○○청장은 2018. 3. 22. 각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각 공개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한편, 피고들은 2018. 10. 25.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였으나, 피고 ○○청장의 경우 현재 재판 중인 유치원 1곳, 피고 ○○청장의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유치원 1곳, 재판 중인 유치원 2곳에 대하여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장이 2018. 3. 16. 한,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장이 2018. 3. 21. 한,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장 2018. 3. 20. 한,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장이 2018. 3. 19. 한,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장이 2018. 3. 22.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이유	❍ 유치원 명단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 명단에 관한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들은 '유치원 알리미'사이트를 통하여 유치원명을 입력할 경우 유치원장의 성명이 공개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여서 유치원의 명칭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치원장의 성명 또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의 성명이 위와 같이 공개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혜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를 유치원의 명칭을 비공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5호증, 을나 제5호증, 을다 제5호증, 을라 제5호증, 을마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피고들이 최근 3년간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으로서 그 적발 내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회계업무 및 근로계약, 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의 부적정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따른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정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유치원 명단에 관한 부분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판단 -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설립 또는 중요사항 변경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바(같은 법 제26조, 제2항),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그리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유치원의 매년 1회 이상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 제5조의2),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같은 법 제21조 제1항)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로 인해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유치원 명단에 관하여 설시한 바와 동일하게 위 유치원장 성명이 유치원장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도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포함 여부** - 원고의 객관적·합리적 의사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시나 또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종국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유치원과 유치원장의 명단도 전부 공개청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수사 및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만으로는 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또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